

〈별표84-2〉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질병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4
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3.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5.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6. 제자리흑색종	D03
7.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8.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9.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1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1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2.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13.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14.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15.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16.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17.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18.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19.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20.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21.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22.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23.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D47.9
24.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주)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구분1에 해당하는 질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